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결과 심의 검토보고

[성북구 재개발·재건축 연구모임]

2023. 11. 28.

운영위원회 전문위원: 한상규

1. 연구단체 운영 현황

연구단체명	구성인원	대표의원
성북구 재개발·재건축 연구모임	7명	이관우

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성북구 재개발·재건축 연구모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 심의.

3. 심의 대상 연구단체

- 성북구 재개발·재건축 연구모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
- 소요예산 : 4,000천원 (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7,325만원의 10%이내 : 16,000천원)

5. 검토보고

- 연구활동 결과보고

연구단체명		성북구 재개발·재건축 연구모임
연구내용	연구주제	성북구 재개발·재건축에 관한 탐색적 연구
	연구목적	재개발·재건축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이해하고, 성북구의 재개발·재건축 현황 및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
	연구결과	(별 첨)

연구 활동비	수령액	금사백만원 (₩4,000,000)	
	집행액	금삼백삼십칠만구천사백오십원 (₩3,379,450)	
	잔액	금육십이만오백오십원 (₩620,550)	
	집행내역	홍보비(현수막)	금오만오천원 (₩55,000)
		강의비(교육강의료)	금삼십육만원 (₩360,000)
		회의비(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)	금사십사만이백원 (₩440,200)
		연구활동 결과보고회 개최비용	금칠십이만오천칠백오십원(₩725,750)
		결과보고서 제작비용	금일백칠십구만팔천오백원 (₩1,798,500)

■ 검토의견

- 2023년 11월 ‘성북구 재개발·재건축 연구모임’ 연구단체가 10월 주민을 대상으로 연구결과 설명회를 개최하고,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,
- 2013년 11월 7일 제정된 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(이하 조례)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,
- 심의내용은 연구 활동비 책정과 배분,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
-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‘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(1억 7,325만원)의 10% 이내에서 지원하고,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’로 규정하고 있고,
- 조례 제10조 제2항 1호 및 2호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
 1. 연구 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및 여비, 2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, 강사료, 전문가 지문경비, 세미나 공청회·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’로 규정되어 있어, 검토결과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 활동비 집행내역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

- 재개발·재건축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를 검토 한 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특히, 성북구는 지역 여건상 노후된 주택 밀집 지역이 많아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 주민의 관심이 많은데, 이에 성북구의 재개발·재건축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이해하고, 성북구의 재개발·재건축 현황 및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성북구 관내의 재개발 현장 방문과 더불어, 토론하고 주민 주거복지를 개선하고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결과를 다수의 주민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연구활동 결과는 적절하다고 사료됨.

※ 관계법령

- 1) 제9조(의원연구단체 지원)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% 이내에서 지원하고,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(개정 2019.3.7.)
- ② 연구단체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7.10.12, 2019.3.7.)
- 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,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. (개정 2019.3.7.)
- ④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,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.
- 2) 제13조(연구활동 보고서 제출)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, 연구결과는 「의원연구사례집」으로 발간할 수 있다.
-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